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인삼류의 제조기준 개선(안 별표 2)

가. 개정 이유

- 기준 제정 후 오랫동안 보완하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불합리한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 시 낭비되는 비용을 절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태극삼의 제조기준 중 물로 익히는 방식을 수증기로 익힐 수 있게 하고, 백삼 중 생건삼의 직경·무게 제한을 삭제하는 한편, 절편백삼의 제조기준을 추가하고, 흑삼의 건조온도를 60℃ 이하로 설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제조방법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제조 기준을 개선하여 인삼류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 개선(안 별표 3의2)

가. 개정 이유

- 현재 원재료인 흑삼의 성분기준이 미설정되어, 엑기스 등 제품 제조 시 홍삼의 기준 준용으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 제품명 : 흑삼 / 규격라벨 : 홍삼
 - 흑삼 제품에 대한 신뢰성 관련 민원이 흑삼 업체로 향하고 있어 흑삼 업체는 기준 설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요구
- 인삼류 등급 표시 시 등수(1·2·3등)와 이름 표시(천·지·양삼)의 병기 표기 원칙을 등수 또는 이름 표시의 하나만으로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등급 표시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절편홍삼·태극삼·백삼·흑삼의 절단면 기준을 삭제하여, 제조업체의 감모율 감소를 통한 제조원가 절감을 유도

나. 개정 내용

- 흑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새롭게 설정하고, 홍삼 등 인삼류의 등급 표시의 숫자·이름 단독 표기를 허용하는 한편, 절편홍삼·태극삼·백삼·흑삼의 절단면 기준을 삭제
* Rg3 0.1% 이상, Rk1+Rg5의 합계 0.2% 이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흑삼의 기준 설정을 통해 흑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삼류의 등급 표시 개선을 통해 수출국 시장에서의 인식 개선(3등급의 품질 저하 오해)을 유도하는 한편, 절편 인삼류의 절단면 기준을 삭제하여 인삼류 제조과정의 감모율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유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인삼류 검사합격품 확인검사 시 불합격품의 수거·폐기 범위 확대 (안 제23조)

가. 개정 이유

- 인삼류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인삼류검사기관(1개소)· 자체검사업체(33개소)의 인삼류 검사합격품 대상 확인 검사 실시(농관원)
 - 확인검사 시 불합격품은 수거·폐기 및 재검사의 조치를 시행중
- 현행 농관원의 수거·폐기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때만 실시, 기타 유해물질(중금속, 벤조피렌) 검출 시 타 행정기관에 통보
 - 인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금속·벤조피렌 기준 초과 인삼의 신속한 수거·폐기 필요

나. 개정 내용

- 농관원의 인삼류 불합격품에 대한 수거·폐기의 범위를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에서 벤조피렌, 중금속 기준 초과로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인삼에서 유해물질 검출 시 신속한 수거·폐기를 통해 인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4)

가. 개정 이유

-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기준을 강화하여 자체검사업체의 검사능력 향상 및 인삼류 검사합격품 품질관리 제고

나. 개정 내용

- 중금속,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검사기준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기간을 최근 1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인삼의 안전성·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인삼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추천방식 규정의 명확화
(안 제28조)

가. 개정 이유

- 인삼산업법으로 운용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의 '21년 부담금 운용 평가결과* 반영
 - * 부담금 부과가 공매방식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도록 근거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 현재 농식품부 장관 통합 고시(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 관리 요령, 농식품부 고시 제2021-102호, '21.12.31.)로 운용 중이나, 인삼산업법에 따른 위임근거 미비

나. 개정 내용

- 인삼류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추천방식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려는 자의 혼동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인삼 경작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가. 개정 이유

- '22년부터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인삼 경작신고의무제가 도입 ('21.12월)되었으며, 조합·지자체에 신고된 경작 신고사항을 의무 자조금단체에서 활용 중으로,
 - 「인삼산업법」 상에서도 안내내용을 삽입하여 법 간 조화를 이루도록 서식을 개정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인삼경작 신고내용을 인삼의무자조금단체에 송부하고 있는 사항을 안내·동의하는 내용 삽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삼농가의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